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6일,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7.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박용갑)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중 건설공제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의 실손의료공제비를 공제계약자 등이 청구할 경우, 공제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전자적 형태로 건설공제조합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자시스템을 건설공제조합이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6조에서는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공제조합 3개 중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만이 단체상해 및 실손의료비보장 공제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중에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에서는 공제사업 중 제5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실손의료공제금 청구와 관련한 조합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보험금 청구 처리 방식이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 가입자와의 보험금 청구방식에서의 편의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제조합 공제상품 가입자의 실손의료공제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4년 10월 24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정안의 시행일이 경과한 점과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행일을 적정한 기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박용갑의원 및 임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